의 안 번	호	27	7 58
의	결	2021.	
연 월	일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출 연월일	2021. 5. 2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58

제출연월일 : 2021. 5. 28. 제 출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의 행정사무를 조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와 세종특별자치시시립도서관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된 2021년도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와 세종특별 자치시시립도서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중앙공원관 리사업소를 세종특별자치시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함(안 제2조)
- 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소관 사무에 시립도서관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
- 다.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관한 사무 분장을 도시성장본부 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조정함(안 제15조 및 제17조)
- 라. 건설교통국장의 소관 사무에 도로관리사업소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

- 마.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무분장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 사업소로 조정함(안 제35조 및 제40조의2)
- 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374명에서 2,450명으로 증원함(안 제46조 및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붙임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다. 그 밖의 사항

- 1) 신 · 구조문대비표(붙임 1)
- 2) 입법예고: 2021. 5. 20. ~ 2021. 5. 24.(4일) 결과, 특이사항 없음
- 3) 부서협의
 - 가) 협의기간: 2021. 5. 20. ~ 2021. 5. 24.(4일)
 - 나)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규제개혁법무 담당관-5342(2021.5.21.)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5343(2021.5.21.)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여성가족과-9326(2021.5.21.)
- 4) 비용추계 현황: 비용추계서(붙임 3)
- 5) 정책조정회의 심의 여부: 해당 없음
- 6)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규제개혁법무담당관-5610(2021.5.28.)
- 7) 관계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공공건설사업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중앙 공원관리사업소를"을 "세종특별자치시공공건설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공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시립 도서관을"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경제산업국"을 "보건복지국,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4호 중 "도서관"을 "독서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립도서관 사무의 기획 · 조정 및 지도 · 감독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6호 중 "농업기반"을 "농업기반, 농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축산, 가축방역"을 "동물복지, 동물방역, 청정

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농지관리"를 "농식품 산업"으로 한다.

제15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8호 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9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도로관리사업소 사무"로 한다.

제17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5. 공원녹지의 확충 · 관리 · 이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호 중 "사항을 포함한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35조 중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도시공원(중앙공원 및 호수 공원은 제외한다)"을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제40조의2 중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을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로, "중앙공원과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제40조의3 중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제40조의4 중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제4장제4절(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도로관리사업소

- 제40조의5(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 제40조의6(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 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0조의7(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제5절(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시립도서관

- 제40조의8(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에 시립도서관을 설치한다.
- 제40조의9(관장) 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0조의10(하부조직 등) 시립도서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374명"을 "2,4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751명"을 "1,827명"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존속 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별표 1]

통합보건지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제3항 관련)

1. 통합보건지소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비고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남부통합보건지소		새롬동, 다정동, 도담동,	
	제로근 14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	
	/ 百 <u></u>	고운동, 반곡동, 집현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해밀동, 산울동, 합강동	

2. 보건지소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비고
연기면	보건지소	연기면 당산로 81	연기면	
연동면	보건지소	연동면 장욱진로 7	연동면	
부강면	보건지소	부강면 부강5길 38	부강면	
금남면	보건지소	금남면 용포로 59	금남면	
장군면	보건지소	장군면 장척로 398-3	장군면	
연서면	보건지소	연서면 대첩로 238	연서면	
전의면	보건지소	전의면 만세길 20-12	전의면	
전동면	보건지소	전동면 운주산로 386	전동면	
소정면	보건지소	소정면 소정구길 201	소정면	

3. 보건진료소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응암 보건진료소	연동면 송암로 246	응암 1, 2, 3, 4리, 노송 1, 2리
황용 보건진료소	금남면 금남구즉로 487	황용 1, 2리, 달전리, 영대 1, 2리, 대박리, 부용 1, 2리, 박산리, 남곡리
송학 보건진료소	장군면 황미창말길 5-4	송학 1, 2리, 용현리, 태산리, 용암 1, 2리
와촌 보건진료소	연서면 용연로 635	와촌 1, 2, 3리, 부동리
쌍류 보건진료소	연서면 도신고복로 427	쌍류리, 청라 1, 2리, 용암리
양곡 보건진료소	전의면 양지편길 17	양곡 1, 2리, 영당리, 달전 1, 2리, 금사리, 다방 1, 2리, 신방 1리
송곡 보건진료소	전동면 금이로 184	보덕 1리 송곡 1, 2리, 송정 1, 2리

4. 건강생활지원센터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64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반곡동, 집현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해밀동, 산울동, 합강동

[별표 5] **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제48조제1항 관련)

지급별	별 	총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읍면동
총	계	2,450				_		
정 무 직	계	2	1				1	
시	장	1	1					
감 사 위 원	장	1					1	
일 반 직	계	1,818				_		
2 급 · 3	급	2	1	1				
3	급	8	7		1			
3 급 · 4	급	1	1					
4	급	59	47	3	2	4	1	2
4 급· 5	급	1				1		
5 급 이	하	1,740						
전 문 경 력	관	7						
연 구 직	계	37				_		1
연 구	관	3	1		2			
연 구	사	34						_
지 도 직	계	33		ı		_	I	
지 도	관	4			4			
지 도	사	29						_
소방직	계	550				_		
소 방 준	감							
소 방	정	3	1		2			
소 방 령 이		547						_
별정직	계	10				_		
	당	1	1					
	당	4	2	2				
5급상당 이	하	5						_

※ 일반직 3급 중 1명은 한시정원으로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생 략)	제2조(소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	②
기 위하여 사업소로 세종특별자	
치시시설관리사업소, <u>세종특별</u>	<u>세종특별자</u>
자치시공공건설사업소 및 세종	치시공공건설사업소, 세종특별
특별자치시중앙공원관리사업소	자치시공원관리사업소, 세종특
<u>를</u> 둔다.	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및 세
	종특별자치시시립도서관을
	<u>.</u>
제7조(부시장) ①・② (생 략)	제7조(부시장) ①・② (현행과 같
	<u>수</u>)
③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	③
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	
한다.	.
1.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1.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	
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제8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정실, 자	

치분권국, <u>문화체육관광국, 보</u> 건복지국, 경제산업국, 도시성 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 국을 둔다.

② (생략)

- 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 <u>2</u> 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분장한다.
 - 1. ~ 3. (생략)
 - 4. 교육지원, 평생교육 진흥, 학교폭력대책, <u>도서관</u>, 행복교육지원센터 및 대학유치·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u><신</u>설>

5. (생략)

제13조 (생 략)

- 제14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 다.
 - 1. ~ 5. (생 략)
 - 6.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원예• 특작, <u>농업기반</u>에 관한 사항
 - 7. 축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 8. 농산물유통, 로컬푸드 육성,

<u>보건복지국, 경제산업</u>
국, 문화체육관광국
② (현행과 같음)
<u>제14조</u> (문화체육관광국)
.
1. ~ 3. (현행과 같음)
4
<u>독서문화 진흥</u>
5. 시립도서관 사무의 기획・조
<u>정 및 지도·감독</u>
<u>6</u> . (현행 제5호와 같음)
제 <u>12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
<u>제13조</u> (경제산업국)
<u>.</u>
1. ~ 5. (현행과 같음)
6
<u>농업기반, 농지관리</u>
8. 동물복지, 동물방역, 청정축
<u>산</u>
<u>7</u>

6차 산업, <u>농지관리</u>에 관한 사 항

9. • 10. (생략)

- 제15조(도시성장본부) 도시성장본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 장한다.
 - 1. ~ 7. (생략)
 - 10.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 용에 관한 사항

11. ~ 14. (생략)

- 제16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 다.
 - 1. ~ 8. (생략)
 - 9. 공공건설사업소 사무(복합커 뮤니티센터에 관한 사무는 <u>제</u> <u>외한다)</u>의 기획·조정 및 지 도·감독

10. (생략)

- 제17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 다.
 - 1. ~ 4. (생 략) <신 설>

용에 관한 사항

- 5. (생략)
- 6. 시설관리사업소 및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

7. (생략)

- 제2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생략)
 - 2. 「동물위생시험소법」제5조 제1항 각 호의 <u>사항을 포함한</u>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 제35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 ·도시공원(중앙공원 및 호수공 원은 제외한다) 및 상하수도시 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 다.

제3절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제40조의2(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중앙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제40조의3(소장) <u>중앙공원관리사</u> <u>업소</u>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

<u>6</u> . (현행 제5호와 같음)
<u>7</u> <u>공원관리</u>
사업소
<u>8</u> . (현행 제7호와 같음)
제22조(소관사무)
1. (현행과 같음)
2
<u>사항</u>
제35조(설치)
문화시설 • 체육시설 • 복지시설
제3절 공원관리사업소
제40조의2(설치)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u>공원</u>
<u>관리사업소</u>
제40조의3(소장) <u>공원관리사업소</u>

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하다

제40조의4(하부조직 등) 중앙공원 제40조의4(하부조직 등) 공원관리 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 사업소-----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신 설>

제4절 도로관리사업소

제40조의5(설치) 법 제114조에 따 라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효율 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도로 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제40조의6(소장) 도로관리사업소 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 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 다.

제40조의7(하부조직 등) 도로관리 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5절 시립도서관

제40조의8(설치) 법 제114조에 따 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시에 시립도서관을 설치한 다.

제40조의9(관장) 시립도서관에 관

<신 설>

- 제4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2,374명</u>이며, 다 음 각 호와 같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1,751명
 - 2. ~ 4. (생략)

<u>상을 두고, 관상은 시상의 명을</u>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의10(하부조직 등) 시립도
서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u>한다.</u>
제46조(정원의 총수)
<u>2,450명</u>
1
1,827명
<u>-,~-· </u>

2. ~ 4.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 하고 집행한다.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 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 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 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삭제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 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 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 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국장과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 비를 나타내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인건비 나. 관련조문 : 개정조례안 제4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단가에 따른

인건비 산정

나. 추계 결과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인건비 27,837,172천원 소요

※ 기준단가: (일반직) 82,931천원, '21년도는 5개월분 산정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3. 작성자 : 정책기획관 김려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지방세							
서	출						
	인건비	2,626,148	6,302,756	6,302,756	6,302,756	6,302,756	27,837,172
재원 조달							
의존	소 계	2,626,148	6,302,756	6,302,756	6,302,756	6,302,756	27,837,172
재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2,626,148	6,302,756	6,302,756	6,302,756	6,302,756	27,837,172
자체	소 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	관 실·과	정책기획관		
6)	실·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김 려 수		
입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조직관리담당 유 민 상		
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윤일형(044-300-2132)		